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3.(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6. 11. 20.(금)

국가물관리위원회-4개 물관리공공기관, 위성 데이터 공동활용 업무협약

- 기후위기 시대, 위성 기술로 물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기후안전망 강화
- 녹조·홍수현황 관측·시설물관리 등 6개 핵심과제 발굴, 수자원공사 등 물관리 기관간 위성 활용 기술협력 점진적 확대 계획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좌관)는 11월 24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세종 어진동 소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물관리 4개 공공기관과 '위성데이터 기반 유역 통합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출범한 '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협의체' 협력과제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물 재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핵심 목표는 광역 단위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이 가능한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유역 전반의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미계측 지역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역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은 실효성 있는 기술협력과 현장 적용을 위해 물환경, 홍수·가뭄 대응, 시설관리 등 3개 분야에서 6개 핵심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 녹조 발생·확산대응, △ 부유물 이동·확산, △ 접경지역 홍수 대응, △ 미계측 지역 수위·침수 분석, △ 가뭄 모니터링, △ 시설물 안전관리 등 6개 협력과제

구체적으로, 위성 광역 감시를 통해 저수지 내 녹조발생과 부유물의 이동·확산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강 등 접경지역 상류 댐의 방류 여부를 감시하며 하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계측 지역의 수위·침수 분석을 통해 저수지 운영 의사결정, 가뭄 관측 등 기후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개 협력기관은 협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며, 내년(2027년) 하반기부터는 합동으로 시범유역을 선정해 현장 실증을 추진하여, 위성정보 활용 기술 고도화 및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성 기반의 신속한 광역 관측(모니터링) 체계는 홍수, 가뭄, 물환경 등 물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부처·기관 경계를 넘어선 굳건한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이나 미계측 지역 등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촘촘하고 과학적인 기후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협력체계 협약서. 끝.

담당 부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획운영팀	책임자	팀 장	정수명 (044-201-8910)
		담당자	전문위원	정용문 (044-201-89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협력체계 협약서**

「위성 데이터 기반 유역 통합관리 협력체계 구축」 협약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참여기관”이라 하며, 위원회와 참여기관을 총칭하여 “기관”이라 한다)는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자원 위성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위성 데이터 기반 유역 통합관리 협력체계」(이하 “협력체계”라 한다)를 구축하며,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력체계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역 통합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본 협약의 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별 위성 활용 업무 현황 및 중장기 추진 계획 공유
2. 위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정보 상호 교류
3. 통합물관리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
4. 다각적인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공유 및 공동 활용
5. 기타 기관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체계】 ①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운영회의·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는 협력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 성과 공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협력체계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제4조【신의성실】 각 참여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협력하며, 위원회는 협력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구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3기 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만료일인 2029년 2월 2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관 간 서면 합의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석·보완】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각 기관은 본 협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누설하거나 협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상대 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9조【법적구속력】 본 협약은 제8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 대해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아니며,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24일



국 가 물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좌 관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기 획 부 문 장

구 자 영



한 국 환 경
공 단
물 환 경 이 사

안 병 용



한 국 수 력
원 자 력 (주)
재생수력사업본부장

정 병 수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기 반 사 업 이 사

김 우 상
